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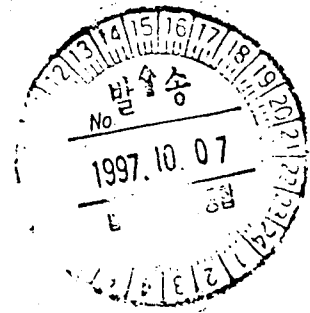
97.10.7

가 처 분 신 청 서

신 청 인 장 하 성
피신청인 이 재 용

수원지방법원

귀중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장 하 성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 김석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01호

피 신 청 인 이 재 용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의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1997. 3. 24.자로 발행한
별지전환사채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의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

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신청인은 1995. 11. 11. 신청의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함)의 발행주식 100주를 매수취득하였고, 현재는 동 회사의 주식 136주를 보유한 주주입니다.(소갑제1호증)

나. 위 삼성전자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급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동 회사의 1997. 3. 24. 현재 납입자본의 총액은 금574,121,85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90,930,944주, 우선주식 23,893,427주,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소갑제3호증)이고,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다. 신청의 이견회는 위 대규모기업집단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삼성전자의 주식 3,497,888주(지분 3.8%)를 보유한 자이고 피신청인 이재용은 위 이견회의 장남이며, 신청의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합니다)는 위 삼성전자의 주식 3,310,218주(지분 3.6%)를 보유한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2. 삼성전자의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발행

삼성전자 이사회는 1997. 3. 24.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총발행가액 600억원, 만기 2002. 3. 23, 전환가격 50,000원, 전환기간 1997. 9. 25.부터 2002. 3. 23., 이자율 연 7%로 된 별지목록 기재 무기명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합니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450억원 상당을, 신청의 삼성물산에게 150억원 상당을 발행하였습니다.

위 6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전액이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주식은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900,000주, 신청의 삼성물산에게 300,000주로, 이에 따라 피신청인 이재용은 그 지분이 0.98%가 되어 자연인으로는 위 이견회, 그의 처인 홍라희에 이어 제 3대 주주가 되고, 신청의 삼성물산의 지분은 3.9% 정도로 늘어납니다.

3. 신청인의 위 전환사채전환금지 등 가처분신청 및 무효청구소송제기와 법원의 전환금지등결정

신청인은 삼성전자의 위 전환사채발행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한편, 전환사채를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실질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한 위법이 있어 무효임을 이유로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환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이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서 심리중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997. 9. 30.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관하여 각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각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삼성전자에 대하여는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권전환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4. 피신청인 이재용과 신청의 삼성물산의 위 전환사채의 전환

그러나 피신청인 이재용은 위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날인 1997. 9. 29. 위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신청의 삼성전자는 같은날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주식 901,243주를 발행하였습니다.

5. 피신청인 이재용 보유주식의 무효

삼성전자가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발행한 신주는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행사에 의한 것인데, 위 전환사채는 앞서본 바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 한편 삼성전자에는 아무런 이익됨이 없이 오로지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신청의 이견회(3.8%의 지분권자) 및 그의 장남인 피신청인 이재용과 신청의 삼성물산(3.6%의 지분권자)의 지배권만을 강화하고 이로써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이의 전환에 의하여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발행된 신주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피신청인 이재용에게 발행된 위 신주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청구권을 가집니다.

6. 보전의 필요성

이에 신청인은 삼성전자를 피고로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계속중인 97가

합12863호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를 신주발행무효청구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려는
바, 위 본안소송의 확정전에 피신청인 이재용이 위 주식을 제3자에 처분할 경우
신청인의 신주발행무효청구권은 소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신청인은 신청취지
와 같은 재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소갑제1호증	실질주주증명서
소갑제2호증	이사회회의록
소갑제3호증	회사등기부등본
소갑제4호증의 1, 2	상장기업분석 표지 및 내용
소갑제5호증	공시
소갑제6호증	잡지기사
소갑제7호증의 1내지4	신문기사
소갑제8호증	정관
소갑제9호증	감사보고서
소갑제10호증	공시
소갑제11호증	신문기사
소갑제12호증	신문기사
소갑제13호증의1,2	각 기업현황
소갑제14호증의 1	해외전환사채발행결의
소갑제14호증의 2	해외전환사채발행조건확정
소갑제15호증	보통주(추가)상장(97. 6. 19.)

소갑제16호증

보통주(추가)상장(97. 7. 2.)

소갑제17호증

회사별대주주등

소갑제18호증

주요주주현황

소갑제19호증

신문기사

소갑제20호증

결 정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분

2통

1. 위임장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997. 10.

위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욱

수원지방법원귀중

전환사채목록

1. 발행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14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4. 발행일 및 납입기일: 1997. 3. 24.
5. 사채의 발행총액: 600억원
6. 사채의 발행조건:
 - 가. 발행가격: 사채권면액의 100%
 - 나. 사채권면액: 금10억원 1종
 - 다. 사채의 이율: 연7%
 - 라. 이자지급방법: 매 사업연도말 후급(발행년도 발행이자는 일할계산)
 - 마. 원금상환방법: 2002. 3. 24. 일시상환
 - 바. 보장수익율: 년9%
7.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조건
 - 1)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액의 100%
 - 2) 전환가격: 50,000원
 - 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다. 전환청구기간: 1997년 9월 25일부터 2002년 3월 23일까지(끝)

주식목록

별지 전환사채목록 기재 전환사채 중 피신청인 이재용이 인수한 금4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여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 901,243주
(끝)